

광주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나57014(본소), 2022나57908(반소) 판결

[청구이의 ·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일석, 이미지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출

변 론 종 결 2023. 6. 14.

판 결 선 고 2023. 7. 12.

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가단551129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9. 9. 10. 작성 증서 2019년 제132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6,3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9. 9.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이 부분에 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4쪽 아래에서 3행의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다음부터 아래에서 2행의 “증거가 없다”까지 부분을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필적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을 제3호증(차용증)은 원고가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설령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망인에게 월급을 수령할 권한을 수여하기 위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망인에게 주었고,

망인은 원고로부터 받은 위 인감증명서, 원고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바, 피고는 망인이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상 금액인 1,6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설령 원고가 망인에게 월급 수령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망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연대보증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은 증거로 쓸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원고를 직접 알지 못하였고 만나거나 통화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망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연대보증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미주, 판사 김연경, 판사 남수진